

농지처분위임증서

(앞쪽)

아래 농지에 관한 소유권은 위임자가 농지저당기관으로서 「농지법」 제13조제1항에 따라 취득한 것으로서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위임자는 한국농어촌공사에 처분을 위임할 것을 확약하고 한국농어촌공사는 이를 수락 하였으므로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라 이 증서를 작성하고 기명·날인합니다.

년 월 일

위임자

주 소

명 칭

서명 또는 인

수임자

주 소

한국농어촌공사 사장

위 대리인

서명 또는 인

①처분위임 농지의 표시

| 소 재 지 | 지 번 | 지 목 | 면 적(㎡) | 소 유 자 |
|-------|-----|-----|--------|-------|
|       |     |     |        |       |
|       |     |     |        |       |
|       |     |     |        |       |
|       |     |     |        |       |

②매각에 관한 사항

| 감 정 평 가 |          |      | 명 도 책 임            | 매각에 관련된<br>중 요 사 항 |
|---------|----------|------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|
| 일 자     | 감정평가액(원) | 감정기관 |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|          |      | [ ] 매도인<br>[ ] 매수인 |                    |

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첨부서류         | 1. 해당 농지의 토지 등기사항증명서<br>2. 해당 농지의 위치가 표시된 지적도등본·임야도등본 |
| 담당직원<br>확인사항 | 해당 농지의 토지대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
처리절차

※이 승인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.

